

▣ 서울대학교 평의원 선출절차 및 방법 시행세칙

2012. 7.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2조제5항과 평의원회 운영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선출하는 평의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원 평의원과 직원 가운데에서 선출하는 직원 평의원 선출에 적용한다.

제3조(평의원의 자격) 평의원의 자격기준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다만 총장, 이사, 부총장, 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 기초교육원장, 처장, 중앙도서관장, 본부장, 부학(원)장, 자유전공학부 부학부장, 기초교육원 부원장, 부처장 및 부분부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선출시기) 선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은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5조(선출절차) ①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의 임기만료 및 기타 결원 사유에 의해 새 평의원을 뽑는 경우 평의원 선출에 관한 내용을 각 대학(원)장 등에게 통지한다.

② 각 대학(원)장 등은 당해 기관의 선출방법(규정 등)을 평의원 선출 전에 정하여 평의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선출방법(규정 등)을 개정할 경우에도 그 사항을 평의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장 등은 제2항의 통보한 방법에 따라 평의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통보한다.

제6조(선출방법)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2012. 7. 1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신규 평의원 선출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